畜産業協同組合法 (下)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제64조(결산보고서의 제출·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貸借對照表·손익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운영의 공개) 조합장은 제64조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운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일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일내에 공고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고기간은 60일이상으로 한다.

제67조(減資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6조 제2항의 기일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8조(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受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과 청산

제69조(합병) ① 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14조제1항에 의한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1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절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분할) ①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2조(합병·분할의 공고 및 최고등) 제66조와 제67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74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4.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해산의 의결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5조(파산선고) 조합의 책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76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에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주무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7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79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에 아니면 그 재산은 분배할 수 없다.

제80조(결산보고서) ①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바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7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제81조·제87조·제88조 제1항 및 제2항·제89조 내지 제93조제1항 및 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절 등 록

제82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을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6호에 게기한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의 총액
3. 인가 년·월·일
4. 임원의 주소·성명

③ 설립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등록 신청서에는 설립인가허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서류 이외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지사무소의 신설등기) ① 조합의 설립후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

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내에 제82조 제2항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이 지사무소를 신설한 때에는 그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85조(변경등기) ① 제82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 등기을 하여야 한다.

② 제82조 제2항 제2호의 변경 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말 현재에 의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등기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의 등기 신청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제66조·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당해 조합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조합의 구역과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합병등기) ① 조합이 합병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 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 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해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④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의 해산 명령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등기는 주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제89조(청산인 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2주일 내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주소·성명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0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무소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승인을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제92조(등기부) 등기소는 축산협동조합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절 축 산 계

제93조(목적) 축산계(이하"契"라 한다)는 계원의 상호협력으로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계의 조직과 구역) 조합원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5조(계원과 준계원) ① 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② 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양축가를 준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준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과 준계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사업) 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지도사업
2. 공동구매사업
3. 공동판매 사업
4. 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97조(설립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계의 설립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업종별 축산협동조합

제98조(목적) 업종별 축산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9조(구역) ① 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다.

② 조합의 구역 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이상 설립할 수 없다.

제100조(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내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01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내에 주소나 거소를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같은 업종의 양축가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102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 및 생산지도 사업
2. 복리후생사업
3.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4. 구매사업
5. 판매사업
6. 보관사업
7. 이용·운송사업
8.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9. 축산물 작업장의 설치·운영
10. 무역사업
11.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12.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및 가축공제
13.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또는 그 대리업무
14.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
15.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16. 정부보조사업
17.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단체협약의 체결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20. 기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03조(준용규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20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2항·제54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이를 업종 조합에 준용한다. 다만, 준용규정 중 "업종조합"은 "지역조합"으로 한다.

제4장 축산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 칙

제104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구역과 사무소) ①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서울 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06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에 회원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07조(회원과 준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으로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단위 축산관련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출자와 책임) ① 회원은 출자 10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좌당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09조(자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제110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조직
3. 명칭의 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6. 회원의 권리·의무
7. 총회, 대리회원 및 이사회
8. 임원과 간부직원
9. 업무의 집행
10.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
11. 축산금융채권
12. 회 계
13. 공고의 방법

제111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총 회

제112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따만, 정관의 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화
2 회원의 제명
3 대의원의 선출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절 대 의 원 회

제11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종합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대의원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정원수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된 대의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6조(비상시의 조치) ① 중앙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4절 이 사 회

제17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조직운영 등에 관한 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절 임원과 직원

제118조(임원과 그 직무) ① 중앙회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4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장리하고 회장·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제119조(임원의 임면과 임기) ① 회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0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52조 제2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1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부회장·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절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2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임원과 간부직원은 영리적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절 사 업

제123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 훈련
4. 회원과 회원의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5.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6. 이용·운송 및 보관사업
7.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8. 축산물 작업장의 설치·운영
9. 가축시장의 운영관리의 지도
10.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11. 무역사업
12.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1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자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출산 자금의 대출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사. 회원 또는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련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아. 비회원에 대한 대출·다만, 비회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15. 축산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16. 정부위촉사업
17. 정부보조사업
18.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류
19.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20.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22.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축산에 관한 자금은 중앙회만이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규정의 시달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4조(장기대출) 중앙회는 기본금과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외국기관으로부터의 1년 이상의 차입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축산금융채권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

제125조(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7절 축산금융채권

제126조(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는 축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축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납입출자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를 규정에 의하여 축산금융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 후 1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구 축산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당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축산금융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27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축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보증한다.

제128조(채권의 소멸시효) 축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129조(축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축산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절 회 계

제13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앙회는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1월 전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1조(결산) 중앙회는 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등)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한국은행·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제9절 준 용 규 정

제133조(준용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제14조 제2항 제4항·제16조·제17조·제20조제3항 및 제4항·제21조 내지 제24조·제26조·제27조 제1항·제28조 내지 제31조·제34조 내지 제38조·제42조 제4항 및 제5항·제43조·제45조 내지 제50조·제52조 제1항·제53조·제4항 및 제6항·제54조 내지 제57조·제60조 내지 제68조·제82조 내지 제86조·제[illegible]조·제92조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42조 제5항중 "총대회"는 "대의원회"로, 제43조 중 "조합장"은 "회장·부회장"으로, 제53조 제6항 중 "제1항 제13호"는 "제133조 제1항 제14호"로, 제60조 제3항 중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제1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82조 제2항 제1호 중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6호"는 "제110 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준용규정 중 "조합·조합장·조합원"은 "중앙회·중앙회장·회원"으로 한다.

제5장 감 독

제134조(주무부장관의 감독) ① 주무부 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 1 항 단서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5조(감사원의 검사) 조합 또는 중앙회가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목적 부문에 한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는다.

제136조(중앙회의 지도) ① 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업무에 관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 1 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대리 의원·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① 조합원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 상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것을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총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 현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 장관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9조(위법행정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 1 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0조(회원에 대한 특별조치)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 3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의 개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1조(결산보고서·년차보고서) 중앙회는 회계년도 중 정부의 중요한 축산정책을 개술하고 중앙회의 업무 상태를 분석하는 년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해산명령)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2 회 이상 제139조 제 2 항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제18조에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50인미만으로 된 때

제 6 장 벌 칙

제143조(벌칙) 조합은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벌칙)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간부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동기를 한 때
3. 감독기관·총회·총대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총대회·대리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

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59조 내지 제64조·제66조·제132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7조·제79조·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제145조(벌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장 보 칙

제146조(수수료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합과 중앙회에 사업을 위촉할 때에는 필요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협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협협동조합(축산부문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회(이하 "축산진흥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원인 특수 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특수 농협협동조합의,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축산진흥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승계재산의 명의변경) 조합과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정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은 이 법중 정관작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초대중앙회장이 각각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의 내용이 제14조 제3항·제103조 및 제133조의정관예에 따른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특수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진흥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총대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다.

제8조(조합간부직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의 전무·상무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의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의 이사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날까지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신용사업 일시유보) 법 제123조 제1항 제13호 중 "라" 목, "마" 목의 "외국환", "사" 목 및 "아" 목의 업무는 은행법 제3조, 한국은행법 제10조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규정될 때까지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농업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을 말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 이관되는 축산부문의 기구 및 업무를 말한다)및 축산진흥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또는중앙회로 본다.